

제2514호
2017. 05. 0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집인: 공 보 실 장 류 용 결
전화: 3396-496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 의 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	
제2017-32호 :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고시(신당5동 백학시장)	2
제2017-33호 :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고시(회현동 역사문화거리)	5
제2017-34호, 35호, 36호 :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	8
● 공 고	
제2017-334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11
제2017-338호 : 2017. 1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	15
제2017-342호 : 공인 등록 공고	17
제2017-355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18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●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32호

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고시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,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목 적

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 사 업 명 : 신당5동 백학시장 일대 간판개선사업

3. 위치 및 규모

○ 신당5동 백학시장 일대 구간 점포 100개점포

※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

4. 사업내용 :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

5. 사업기간 : 2017년 5월 ~ 2017년 11월까지

6. 사업방법 :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

7. 소요예산 : 250,000천원(구비 200,000천원, 시비 50,000천원)

-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,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
- 1업소 당 2,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
-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
-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
-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
-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

8. 추진내용

-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
-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
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,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·설치
- 간판개선·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
 -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, 점포주, 전문가 등으로 「간판개선 주민위원회」구성·운영
 -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
 -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(불법간판 신고 등)

9.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

구 분	간 판 설 치 기 준
총 수량	○ 간판수량 : 1업소 1간판 ※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1. 1면의 면적이 0.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.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(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) 2.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.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
가로형 간 판	○ 표시형태 : 판류형 또는 입체형 ○ 설치위치 : 3층 이하 정면 ○ 표시규격 ▶ 가로 :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% 이내(최대 10m 이내) ▶ 세로 : 판류형 80cm 이내, 입체형 45cm 이내
돌 출 간 판	○ 설치위치 :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(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) ○ 표시규격 ▶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(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) ▶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, 세로크기는 3.5m 이내
창문이 용 광고물	○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, 폭 20cm이하 ○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, 면적 0.18m 이하 ○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○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, 세로 폭 45cm, 길이 3m, 창문면적 1/4 이내
기 타 준수사항	○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○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(KS 인증제품)으로 하고 절전용 on-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○ 검정 또는 빨강(주황, 핑크 포함),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○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(외벽 보수, 청소등)

※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

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. 또한,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 중구 조례 개정시 그 사항을 따른다.

9. 허가 및 신고

-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.
- 단,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m²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.

10. 광고물 등의 심의

- 광고물 등의 규격, 위치, 색깔,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.

11. 위치도면

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.
3. (기타사항)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33호

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 고시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,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·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목 적

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.

2. 사 업 명 : 회현동 역사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

3. 위치 및 규모

○ 회현동 역사문화거리 구간 점포 92개점포

※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

4. 사업내용 :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

5. 사업기간 : 2017년 5월 ~ 2017년 11월까지

6. 사업방법 :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

7. 소요예산 : 230,000천원(구비 150,000천원, 시비 80,000천원)

-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,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
- 1업소 당 2,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
-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
-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
-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
-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

8. 추진내용

-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
-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

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,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·설치

○ 간판개선·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

-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, 점포주, 전문가 등으로「간판개선 주민위원회」구성·운영
-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
-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(불법간판 신고 등)

9.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

구 분	간 판 설 치 기 준
총 수량	○ 간판수량 : 1업소 1간판 ※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1. 1면의 면적이 0.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.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(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) 2.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.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
가로형 간 판	○ 표시형태 : 판류형 또는 입체형 ○ 설치위치 : 3층 이하 정면 ○ 표시규격 ▶ 가로 :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% 이내(최대 10m 이내) ▶ 세로 : 판류형 80cm 이내, 입체형 45cm 이내
돌 출 간 판	○ 설치위치 :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(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) ○ 표시규격 ▶ 간판 아래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(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) ▶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, 세로크기는 3.5m 이내
창문이용 광고물	○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, 폭 20cm이하 ○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, 면적 0.18m 이하 ○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○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, 세로 폭 45cm, 길이 3m, 창문면적 1/4 이내
기 타 준수사항	○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○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(KS 인증제품)으로 하고 절전용 on-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○ 검정 또는 빨강(주황, 핑크 포함),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○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(외벽 보수, 청소등)

※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

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. 또한,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 중구 조례 개정시 그 사항을 따른다.

9. 허가 및 신고

-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.
- 단,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㎡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.

10. 광고물 등의 심의

- 광고물 등의 규격, 위치, 색깔,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.

11. 위치도면

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.
3. (기타사항)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34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5월 0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8 외 3건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78	2017.05.04	건물철거
2	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9길 49-13	2017.05.04	건물말소
3	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9길 49-17	2017.05.04	건물말소
4	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9길 49-18	2017.05.04	건물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35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5월 0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-27의 1건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-27	2017.05.04	건물말소
2	서울특별시 중구 중림9길 19	2017.05.04	건물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36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05월 0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나길 26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나길 26	2017.04.19	건물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334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7년 5월 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(제4조의3)(시조례 신설)

-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총 주차대수의 3% 이상 설치
-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
-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

나.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(별표1)(시조례 신설)

- “전기자동차”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264, FAX: 3396-8873, 메일: rokaff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산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(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)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, 총 주차대수의 3% 이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.

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9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별표 1의 비고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“전기자동차”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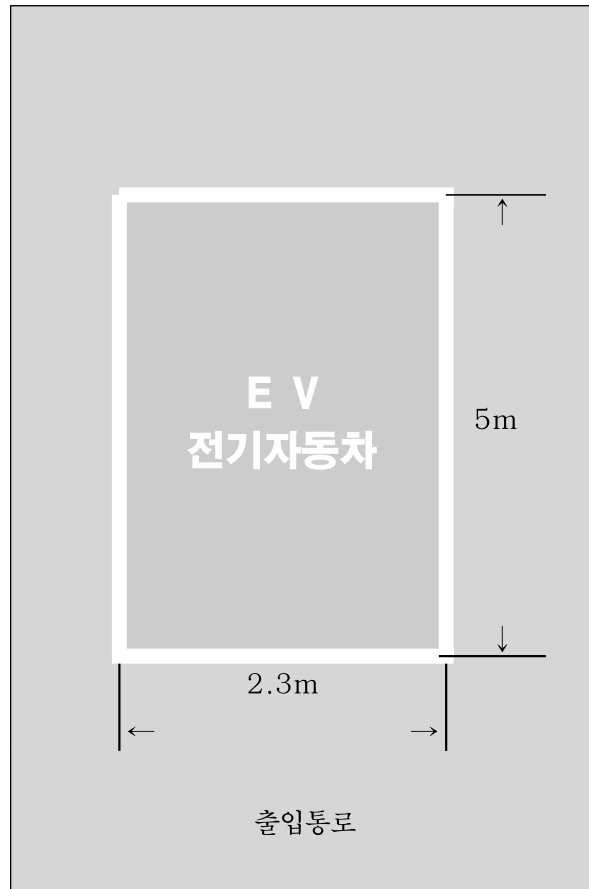
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9호서식>

전기자동차우선 주차구획(제4조의3제3항 관련)



전기자동차우선 주차구획(제4조의3제3항관련)

- 비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3m이상×세로 5m이상)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3(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법제 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(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)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, 총 주차대수의 3% 이상으로 한다.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.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9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【별표1】- 비 고 - 1. ~ 21. (생략) <u><신 설></u>	【별표1】- 비 고- 1. ~ 21. (현행과 같음) 2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전기자동차”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338호

2017. 1. 1.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17. 1. 1.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7년 4월 28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개별주택가격 공시

가. 공시(가격)기준일 : 2017. 1. 1.기준

나. 개별주택수 : 5,380호

(단독주택 2,558호, 다가구 842호, 다중 5호, 주상용 1,826호, 기타 149호)

다. 공시사항 : 개별주택의 소재지, 면적, 가격등

라. 열람방법 및 장소 :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,

일사판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(<http://kras.seoul.go.kr>)

2. 이의신청방법

가. 2017. 1. 1.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 (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, 세무1과,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)에 작성하여 우편·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.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-687호

2017년 1.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.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7년 4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2017년 1.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가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17년 1월 1일

나. 공동주택수 : 12,427,559호

(아파트 9,928,868호, 연립 489,494호, 다세대 2,009,197호)

다. 공시사항 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, 호수, 면적, 가격
(내용 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)

라. 열람방법 및 장소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,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(또는 읍면동) 민원실

2. 이의신청방법

가. 2017년 1.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, 시군구청(또는 읍면동) 민원실에 비치)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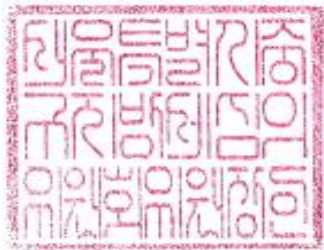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-342호

공인 등록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조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등 록 사 유 : 서울특별시중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
2. 신조 등록 공인 내역

공 인 명	인영	규격(cm) 및 서체	관수부서
서울특별시중구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장인		3.6 × 3.6 한글서체	세무1과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355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월 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 개정 및 지침 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개정내용

- 상위법령 개정 및 지침 제정 반영 규제 정비
 -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“시설”을 “특정관리대상시설”로 변경하고 “관리 하 는” 띄어쓰기 오기로 “관리하는”으로 정비함
 - “빗물저류조” 수문관측시설을 “하천시설·배수관·유수지의” 수문관측시설로 변경함
 - “정밀안전진단(또는 점검)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(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보수·보강, 철거” 신설
 - “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” 신설
 - 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·보강” 신설
 -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“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 규정 신설

3. 의견제출

-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안전치수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, 서울 중구청), 문의전화 : 3396-6175, FAX: 3396-8849, 전자우편 : gjangang@junggu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조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나목 중 “시설”을 “특정관리대상시설”로, “관리하 는”을 “관리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사목 중 “빛물저류조”를 “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”로 하며,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.

자. 정밀안전진단(또는 점검)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(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보수·보강, 철거

차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

제6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·보강

9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금의 용도) 1. (생 략) 가. (생 략) 나.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 (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 거나 관리하 는 것으로 한 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 수·보강사업 다. ~ 바. (생 략) 사. 빗물저류조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·정비·보수사 업 아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2. ~ 7. (생 략) <신 설>	제6조(기금의 용도) 1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특정관리대상시설(----- ----- 관리하는 ----- -)----- 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하천시설·배수관·유수지의 ----- -----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정밀안전진단(또는 점검)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(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 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보수·보 강, 철거 차.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방재 시설의 보수 보강 3. ~ 8. (현행 제2호~제7호와 같음) 9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 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